

1

한파 대비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

양성평등담당관 : 이정은 ☎2133-5005 양성평등정책팀장 : 박희원 ☎5007 담당 : 김은정 ☎5011

□ 추진배경

- LNG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계속되는 겨울철 한파·대설로 난방 사용량 급증하여 시설의 난방비 부담 가중

□ 난방비 특별지원 개요

○ 지원대상 : 74개소

- 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*(’22.12월, 국고보조시설 외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지원 필요 시설

* 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 ‘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’ (’22.12.28)

- 1~2월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되, 지원금액은 기관 규모(정원)별로 차등화
- (이용시설) 일괄 30만원, (생활시설) 정원 50명 이하 30만원/~100명 50만원/ 100명 초과 100만원

※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은 중앙부처 특별지원금 및 기정예산 활용하되, 난방비 집행에 따른 비용 부족분은 추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지원 예정(양성평등담당관-1645(2023.1.27.))

-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(72개소)

아 동	· 생활시설(43) : 아동양육시설(35), 아동일시보호시설(2), 아동보호치료시설(3), 자립지원시설(3) · 이용시설(1) : 아동상담소(1)
노숙인	· 생활시설(2) : 여성노숙인시설(2)
한부모	· 생활시설(26) : 한부모가족지원시설(26)

- 기타 지원 필요 시설(2개소) :

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긴급보호쉼터(1),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(1)

- 지원기준 : 3개월분 난방비 지원하되, 시설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
 - 면적 기준 월별 최저 1백만원(1,500㎡ 미만) ~ 최대 10백만원(6,500㎡ 이상)

시설 면적	월별 지원액	
	이용시설	생활시설
1,500㎡미만	1,000천원	2,000천원
2,000㎡미만	1,500천원	3,000천원
2,500㎡미만	2,000천원	4,000천원
3,000㎡미만	2,500천원	5,000천원
3,500㎡미만	3,000천원	6,000천원
4,500㎡미만	3,500천원	7,000천원
5,500㎡미만	4,000천원	8,000천원
6,500㎡미만	4,500천원	9,000천원
6,500㎡이상	5,000천원	10,000천원

- 소규모시설은 시설 이용 규모를 고려하여 정액 지원(월 300천원)
 - : 아동상담소(1),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(1),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긴급보호쉼터(1)

□ 예비비 사용 현황

- 사용 규모 : 74개소, 총 797,700천원 (3개월분)

(단위 : 개소, 천원)

부서명	시설유형		개소 수	총 소요예산	비고
합 계			74	797,700	
양성평등담당관	여성노숙인시설	생활	2	48,000	지방이양시설
아동담당관	아동양육시설	생활	35	462,000	지방이양시설
	아동일시보호시설	생활	2	51,000	지방이양시설
	아동보호치료시설	생활	3	51,000	지방이양시설
	아동자립지원시설	생활	3	18,000	지방이양시설
	아동상담소	이용	1	900	지방이양시설
	가족다문화담당관	한부모가족복지시설	생활	26	165,000
가족다문화담당관	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	생활	1	900	
	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긴급보호쉼터	생활	1	900	

○ 추진일정

- 난방비 특별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: '23.1.31.
-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 : '23.2.2.
- 대상 시설 예산 교부 : '23.2월중